

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
민간위탁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64
----------	------

2016년12월19일
보건복지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0. 31. 서울특별시장 제출
2. 회부일자 : 2016. 11. 3.
3. 상정일자 : 가.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6년 12월 1일 상정(심의 보류)】
나.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6년 12월 19일 상정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장경환 복지본부장)

1. 제안이유

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‘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25
- 시설규모 : 209.31m² (지상6층)
 - 사무공간, 상담실, 회의실, 교육장, 프로그램실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7. 2. ~ 2020. 1.)
- 운영사업(센터의 기능)
 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

-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 -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'17년 예산액 : 37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
- 따라서,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제1항
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(운영의 위탁)

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회계연도 53,200천원 편성

(보증금 50,000천원, 부동산중개수수료 3,200천원)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III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1 동의안의 취지

- 동북권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(이하 ‘동북 지원센터’)는 ‘서울시 치매·요양종합대책’ 중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 바, 그 관리운영을民間위탁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임.

2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필요성

-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근무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소지자 대비 27%인 5만 9,753명임.

<표> 권역별 요양보호사 현황

구 분	계	서북권 (6)	서남권 (7)	동북권 (8)	동남권 (4)
자치구	25개구	종로, 중구 용산, 은평 서대문, 마포	강서, 양천 구로 , 영등포 동작, 금천, 관악	성북, 동대문 성동, 광진, 강북, 도봉, 노원, 중랑	서초, 강남 송파, 강동
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수 (명)	59,753 (자격증소지자 대비 27%)	9,321	19,220	20,477	10,735

*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현황('15년말 현재) : 218,497명

-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「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(2013년 1월)」을 보면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가 강하고, 근로여건이 열악하여, 인력지원을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음.

<표> 요양보호사에 대한 주요 노동실태 조사 결과

- 부적절한 임금이나 연차사용의 제한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함.
-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로 어려움 겪고 있으며,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.
-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함.
-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함.
- 이용자나 보호자의 과도한 요구나 폭행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함.
-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함.
-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등

* 출처: 서울연구원

- 집행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(2008년 7월) 등 대부분의 정책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반면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

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종사자(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)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계획을 수립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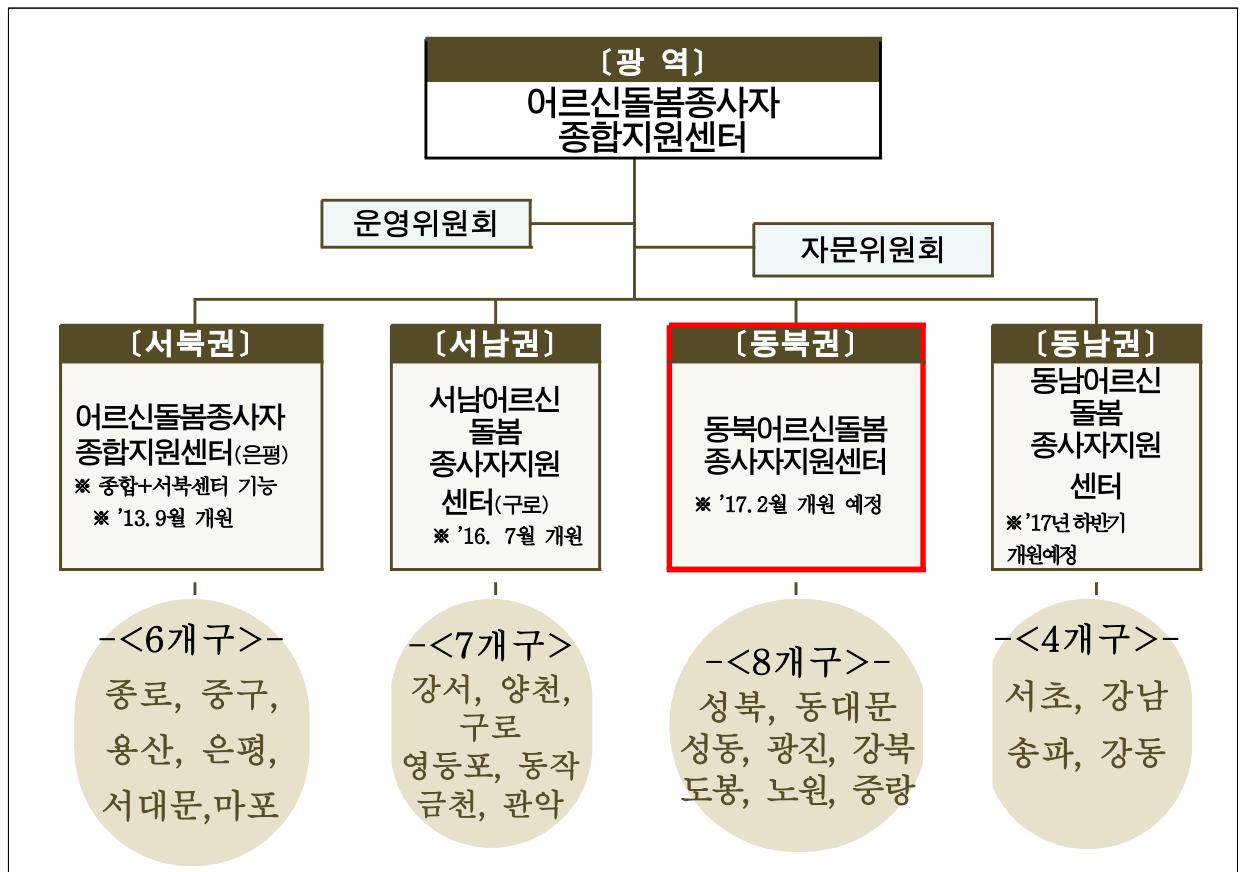
- 같은 계획에 따라 2013년 9월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(은평구), 2016년 7월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(구로구) 개원에 이어 동북 지원센터(동대문)를 설치·운영하고 하는 것임.
- 돌봄지원센터 사업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‘좋은 돌봄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<표> 동북 지원센터 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면적	개관예정	위탁간
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	동대문구 장한로 25	209.31 m ²	2017년 2월 예정	3년

- 집행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광역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4개 광역권별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호 협조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임.(별첨자료-사무분장 내역)

<그림> 센터 체계도 및 설치 현황



3 민간위탁의 타당성

가. 공익성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협용 검토

- 집행부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북 지원센터의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<표> 동북 지원센터 사무내용

- | |
|--|
| 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사항 |
| ② 돌봄종사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|
| ③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|
| ④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|

- 대상 사무의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직접 시행해야 하고 민간위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, 동북 지원센터의 사무내용을 보면 ① 시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, ② 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위탁 운영에 큰 문제는 없고, ③ 집행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겠음.

나. 직영방식과 비교 검토

- 동북 지원센터에 대한 직영방식과 비교할 때,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뿐만 아니라, 지역의 자원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임.
- 또한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, 기능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는 센터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영방식보다는 민간위탁방식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 검토

- 집행부의 동북 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.
- 다만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원칙에 따라 2017회계연도 편성에 앞서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은 후에 동북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.
- 앞으로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참고자료 - ①

권역별 센터와 종합지원센터 사무분장 내역

기 능	권역별 센터(지역별)	종합지원센터(광역)
시 설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평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-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-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(17.상반기 예정) -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(17.상반기 예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(은평)
돌 봄 종 사 자 역 량 강 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강증진 지원 • 직무능력 향상 지원 • 리더 양성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강사 pool 관리 및 지원 • (전문)요양보호사 관리
사 회 적 인 식 개 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시민 캠페인(권역) • 기관 및 종사자 인식개선 지원 • 좋은돌봄 사례 발굴·수집(권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시민 캠페인(광역) • 법·제도 개선 건의 등 대외적 업무 • 좋은돌봄 사례 수집(광역)
돌 봄 종 사 자 권 익 용 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충 상담 • 취업 상담 • 정보 제공 • 자조모임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인·구직 지원 • 상담 통합DB 관리
정 책 연 구 프로그램 개발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돌봄정책 관련 연구 • 매뉴얼 개발·보급 • 교육교재 개발·보급
협력체계 구축 타 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네트워킹(권역/제공기관) • 홍보(권역/제공기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네트워킹(광역) • 홍보(광역) • 통합DB 구축·관리

참고자료-②

현장사진 및 위치도



건물외관

내부전경

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6명, 전원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464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‘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25
- 시설규모 : 209.31m² (지상6층)
 - 사무공간, 상담실, 회의실, 교육장, 프로그램실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7. 2. ~ 2020. 1.)
- 운영사업(센터의 기능)
 -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
 -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·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 -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‘17년 예산액 : 37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, 인식개선,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따라서,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제1항
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(운영의 위탁)
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 김형진 (☎ 2133-7431)